

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4.1.17>

기 관 명

우	주소	전화/	전송/
○○과	과장 ○○○	사무관 또는 주사 ○○○	담당자 ○○○

문서번호

시행일자

수 신

발 신

[인]

제 목 항만구역등 지정통보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(항만구역·어항구역·산업단지·택지개발예정지구·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·농업진흥지역·보전임지)을/를 지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.

- 아 래 -

건 명	
위 치	
지 정 면 적(m ²)	
지정근거 및 일자	
지 정 사 유	
도시·군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별 면적	
지 정 관 계 법 령	
구비서류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(축척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가 간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)의 지형도(수치지형도를 포함함. 이하 같음) 2. 항만구역·어항구역·산업단지·택지개발예정지구·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·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범위를 표시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. 이 경우 지형도의 작성에 관하여는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에 따릅니다.	

210mm×297mm

(보존용지(2종) 70g/m²)